

부 산 지 방 법 원

제 8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3가합18908 손해배상(기)

원 고 1. A(개명전: B)

2. C

3. D

4. E

피 고 주식회사 코리녹스

변론종결 2016. 7. 20.

판 결 선 고 2016. 9. 7.

주 문

- 1. 피고는 원고 A에게 75,060,038원, 원고 C에게 8,374,700원, 원고 D에게 5,000,000원, 원고 E에게 1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. 12. 24.부터 2016. 9. 7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- 3. 소송비용 중 1/2은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 A에게 179,545,558원, 원고 C에게 21,241,000원, 원고 D에게 10,000,000원, 원고 E에게 2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. 12. 24.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관계

- 1) 피고는 부산 기장군 F 일원에서 G 조성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를 실시한 시행자이다.
- 2) 원고 A는 위 공사현장에서 자동차 추락사고를 당한 자이고, 원고 C은 원고 A의 아버지, 원고 D는 원고 A의 어머니, 원고 E은 원고 A의 동생이다.

나. 이 사건 사고의 경위

1) 원고 A는 2012. 12. 23. 17:30경 원고 C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(이하 '이 사건 차량'이라 한다)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I 야구장을 찾아가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왕복 2차로에 진입하여 운행하던 중 도로 끝 지점(이하 '이 사건 사고지점'이라 한다)에 이르러 약 6m 80cm 아래로 추락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.



- 2)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폐쇄성 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.
- 3)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가 끝나는 부분은 인접 토지보다 약 6m 80cm 가량 높은 낭떠러지인데,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이나 방호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, 이 사건 공사현장 입구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나 안내판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.

다. 관련 형사소송의 결과

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였던 피고의 직원 J은 '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 낭떠러지 표시를 하거나 차량 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막 등을 설치하고 차량 등이 진입하더라도 인접 부지로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난간대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방치하여 원고 A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'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 상죄로 기소(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1088호)되어 2014. 11. 20.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9, 10, 13, 1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,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

가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그 끝나는 부분이 인접 토지보다 약 6m 80cm 가량 높은 낭떠러지이므로,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낭떠러지로



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의 끝부분에 가드레일이나 방호벽 등을 설치하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의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·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나. 책임의 제한

다만,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사고지점은 G 조성공사현장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A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고 원고 A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%로 제한한다.

3. 손해배상의 범위

가. 일실손해

- 1) 기초사실
 - ① 성별 및 생년월일 : K생 남자(사고 당시 만 24세 11개월 22일 남짓)
 - ② 가동연한 : 만 60세가 되는 2047. 12. 31.
 - ③ 직업 및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

이 사건 사고일인 2012. 12. 23.부터 원고 A가 만 60세가 되는 2047. 12. 31.까지 월 22일간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, 도시일용노임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초소득으로 하여 원고 A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.



④ 노동능력상실률

⑦ 이 사건 사고일인 2012. 12. 23.부터 2013. 6. 3.까지 : 100%(입원기간)

원고 A는 2012. 12. 23.부터 2013. 5. 9.까지, 2013. 7. 3.부터 2013. 7. 27.까지총 163일간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, 계산의편의상 2012. 12. 23.부터 163일 이후인 2013. 6. 3.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한편, 갑 제11호증, 갑 제16호증의 2, 갑 제17호증의 40, 41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 A는 2014. 8. 21.부터 같은 달 8. 26.까지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하여 소장 부위의 복강내 양성종양 등 제거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복강내 양성종양이 이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,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(외과)에 의하면, 감정의는 복강내 양성종양은 복부 손상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, 원고 A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복부 손상을 받긴 하였으나, 그 손상 부위가 위 수술 부위와 달라 복강내 양성종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, 위 복강내 양성종양 치료를 위하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한 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.

(나) 2013. 6. 4.부터 2047. 12. 31.까지 : 5%(성형외과)

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부위 및 정도, 피해자의 성별,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, 직종 선택, 승진,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(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09다105062 판결참조)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



과(성형외과)에 의하면, 감정의는 원고 A가 전두부 및 협부에 반흔(15cm), 경부에 기관 삽관 후 반흔(3.5cm ×1cm), 둔부에 반흔 및 함몰변형(14cm, 10cm × 2cm, 8cm × 2cm, 8cm × 2cm)이 있어 국가배상법 제12급 제13항 "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"에 해당하여 15%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평가한 사실은 인정되나, 국가배상법상 추상장해의 기준은 다른 장해부위에 대한 상실률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은 상실률을 인정하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고, 원고 A의 성별 및 나이, 반흔의 크기 및 위치, 원고 A가 향후 반흔 성형수술로 그 추상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, 원고 A에게 발생한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%로 봄이 상당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4호증의 13, 16, 갑 제16호증의 2, 갑 제24호증(가지 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또는 영상, 이 법원의 부산대학병원장에 대한 2014. 7. 3.자 및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경험칙, 변론 전체의 취지

2) 계산: 31,863,886원(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. 월 5/12%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.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,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. 이하 같다.)

# #	기간호일	기간 말일	노일단가	월수	4年	상실물	ml	호프만1	m2	호프만2	m1-2	격용호프만	기간일실수입
3 000	2012-12-23	201 3- 1-22	80,782	22	1.778.174	100%	•	0.9958	0	0.0000	1	0,9958	1,768.644
2	2013-1-28	2/13-6-8	81,443	22	1,791,746	100%	5	4,9384	1	0,9958	4	3,9426	7,064,187
3	2013-6-4	2013-9-22	81,443	22	1,791,746	88	9	8,8173	Б	4,9384	4	2,8789	347.ED)
4	2013-9-28	2014-1-22	88,976	22	1.847.450	15	13	12,6344	9	8,8173	4	3,8171	352.F85
Б	2014-1-23	2014-9-22	B4,166	22	1.861,662	133 6	21	20,0913	18	12,6344	8	7,4669	690,379
6	2014-9-28	2015-1-22	86,686.	22	1907,007	- 5%	25	23,7847	21	20,0913	4	3,8434	347,414
7	2015-1-23	2016-9-22	87.80B	22	1.931.710	逩	30	30,8696	25	23,7847	8	7,1248	688,152
8	2016-9-28	2047-12-31	89,568	22	1,970,452	/ B6	420	240,0000	33	30,8696	387	2(9,1406	20,605,065
3	(※호프만수치기	- 240을 초쾌하는	경우이므로 24	00로 7	(한함)				9			합계맥(원):	31,863,836



나. 치료비 : 56,773,660원(= 30,221,480원 + 26,552,180원)

1) 기왕치료비 : 30,221,480원

갑 제5호증의 14 내지 21,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, 11 내지 39, 42 내지 80,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,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, 동아대학교병원장,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우측 안와골절, 두부의 압박궤양, 둔부의 압박궤양, 혈흉 등의 치료를 위하여 2013. 12. 23.부터 2015. 1. 6.까지 합계 30,221,48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.

원고 A는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치료비 및 위 치료를 위한 교통비 합계 3,200, 930원의 지급도 구하나,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삼성병원에서 실시한 복강내 양성종양등 제거수술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치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, 원고 A의 위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2) 향후치료비 : 26.552.180원(= 23.235.639원 + 938.227원 + 2.378.314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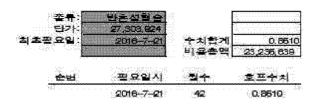
가) 성형외과 : 23,235,639원

원고 A는 향후 안면부 반흔 성형술 및 경부와 우측 체간부 반흔 성형술, 수술후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27,303,924원(= 수술비 등 26,050,000원 + 개호비 1,253,924원1))이므로, 이를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다음날인 2016. 7. 21.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2012. 12. 242).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,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3,235,639원이 된다.

¹⁾ 향후 수술 2회시 각 2주간 성인 1인의 하루 4시간 개호비용 : 1,253,924원(= 일 89,566원 × 1/2 × 28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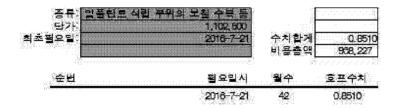
²⁾ 원고 A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산일





나) 치과: 938,227원

원고 A는 향후 상악 우측 측절치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보철 수복 및 하악 우측 견치 레진치료가 필요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1,102,500원(=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보철 수복 100만 원 + 레진치료 102,500원)이므로, 이를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. 7. 21.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2012. 12. 24.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,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38,227원이 된다.



다) 정신건강의학과 : 2,378,314원

원고 A는 향후 1년간 주 1회 정신과적 약물 및 심리 치료가 필요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1개월당 237,397원[= 일주일 비용 54,634원(= 10,464원 + 44,170원) × (365일 ÷ 7일) ÷ 12개월, 원 미만 버림]이므로,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. 7. 21.부터 1개월 간격으로 1년간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2012. 12. 24.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,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,378,314원이 된다.



종류:	약물 및 심리 치료		ļ	
달가:	237,397		1 10,0185 2,378,314	
트펌요립:	2016-7-21	수치합제		
등필요립:	2017 -6- 21	비용총맥[
~ #	필드일시	월수	호프수치	
	2016-7-21	42	0.8510	
2	201 6 8- 21	45	0.8480	
5	201 6-9- 21	44	0.8450	
4	2016-10-21	45	0.8421	
5	2016-11-21	46	0.8591	
6	201 6 12 2 1	.47	0.8362	
7	2017-1-21	48	0.8333	
8	2017-2-21	49	0.8304	
9.	2017 -9- 21	50	0.8275	
10	2017 -4- 21	51	0.8247	
11	2017 -5- 21	52	0.8219	
	2017 -6- 21	56	0.8191	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다. 기왕개호비

1) 개호의 기간 및 정도

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2. 12. 23.부터 2013. 7. 27.까지, 2014. 8. 21.부터 2014. 8. 26.까지 총 223일 동안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. 3. 7. 일반병실로 옮겨져 2013. 5. 9.까지 복부내 기관의 손상 등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3. 7. 3.부터 2013. 7. 23.까지 미골욕창, 안면부 및 체부, 욕창에 대한 흉터반흔 제거술 등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4, 5, 23, 2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바,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 A가 2013. 5. 9. 퇴원



한 이후 다시 입원치료를 받은 2013. 7. 3.까지도 욕창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, 원고 A의 상해의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 A가 일반병실에 입원해 있었던 2013. 3. 7.부터 욕창 등에 대한 입원치료를 완료한 2013. 7. 23.까지 간병인이나 가족에 의한 식사, 목욕, 배변 및 배뇨, 체위변경 등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성인 1인의 개호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(일반적으로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의 전적인 개호를 받으므로 원고 A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의 개호비 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, 원고 A는 2014. 8. 21.부터 같은 달 8. 26.까지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하여 복강내 양성종양 등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위 수술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로 보기 어려우므로, 이를 위한 개호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).

2) 계산 : 12,133,938원

2013. 3. 7.부터 2013. 7. 23.까지 기간 동안의 개호비를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2012. 12. 24.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,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,133,938원이 된다.

기간호열 기간달일	계호비단가 인원	월비용 m1 호프만1	m2 <u>\$ = 0</u> 2	m1-2 적용호프린 기간개호비
1 2013-3-7 2013-7-23	81,443	2,477,224 7 6,8857	2 1.9875	5 4.8982 12,183,938

라. 책임의 제한

1) 책임비율: 70%

2) 계산 : 70,540,038원[= 100,771,484원(= 일실수입 31,863,886원 + 치료비 56,773,660원 + 개호비 12,133,938원) × 0.7, 원 미만 버림]

마. 공제

갑 제8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 A가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흥국화재 해상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보험금으로 15,480,000원을 지급받은



사실이 인정되는바,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 70,540,038원 중 위 15,480,000원을 공제하면, 55,060,038원(= 70,540,038원 - 15,480,000원)이 된다.

바. 위자료

- 1) 참작 사유 :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, 상해의 정도, 원고 A의 나이,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
 - 2) 결정금액: 원고 A 2,000만 원, 원고 C, D 각 500만 원, 원고 E 100만 원사. 원고 C의 재산상 손해액

원고 C은 2012. 12. 초순경 28,721,000원에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2012. 12. 11. 자동차등록을 하였는데, 그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2012. 12. 23.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자 위 차량을 25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7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, 피고는 원고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26,221,000원(= 차량 구입대금 28,721,000원 - 차량 판매대금 250만 원)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8,354,700원(= 26,221,000원 × 0.7)에서 원고 C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보험금 14,980,000원을 공제한 3,374,700원(= 18,354,700원 - 14,980,000원)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아. 소결

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5,060,038원(= 재산상 손해액 55,060,038원 + 위자료 2,000만 원), 원고 C에게 8,374,700원(= 위자료 500만 원 + 재산상 손해액 3,374,700원), 원고 D에게 위자료 500만 원, 원고 E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. 12. 24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. 9. 7.까지는



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판사	이재덕
	판사	이민지
	판사	하진우